

아동 수당 제도 안내

센다이시 2022. 10

아동 수당은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출생 또는 전입한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

아동이 태어나거나 아동 수당 수급자가 다른 시구정촌에서 전입했을 때는 센다이시에서 아동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 센다이시의 구청/종합지소의 신청창구에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 ◆출생일 또는 전 거주지 전출예정일(사유 발생일)이 월말인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달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사유 발생일 다음달분부터 아동 수당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우송 신청인 경우, 「인정 청구서」가 창구에 도착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 ◆공무원은 근무처에 신청합니다. 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센다이시에 신청할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근무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가 독립 행정법인인 경우, 근무처에 신청하지 말고, 센다이시에 신청해 주세요.

【주의】

- 「15일째」가 휴업일(토, 일, 축일 등)이라면, 다음 영업일이 제출 기한이 됩니다.
- 우편물 취급제도 변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우송기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 황금연휴와 연말연시 등은 신청 창구에서 수속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진 달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구비서류

신청하기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②~⑤는 후일에 제출해도 됩니다.

【필수서류】

①인정 청구서※¹

신청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¹ 인정 청구서에 청구자와 배우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 카드※²와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 (얼굴 사진 첨부)」을 지참해 주세요. 이 서류들이 없으면 담당 창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² 개인번호 통지서가 아닙니다. 통지카드는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내용이 주민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②청구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확인 서류

통장 또는 현금인출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아동 명의 계좌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자만 제출】

③청구자의 건강 보험증 사본

3 세 미만 아동 양육자 중, 연금 정보를 센다이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 증명」을 별도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④신립서

양육하는 아동과 별거하는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

⑤기타 필요서류

위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아동】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 (0세부터 15세가 된 날의 연도말) 아동

【수급자】

다음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다이 시민(센다이시에 주민등록해서 주민표가 있음)

- ① 지급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아동 생계를 유지하는데 비율이 높은 자※^{3,4} (주민등록한 외국인도 가능)
- ② 지급 대상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 ③ 지급 대상 아동의 부모가 외국에 거주 중에 부모로 지정된 자(부모 지정자)
- ④ 지급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양부모
- ⑤ 위①~④ 이외로 지급 대상 아동의 생계를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자

※³ 아동 부모 (또는 양육자) 소득액을 비교해서 소득이 많은 자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⁴ 이혼 후 또는 이혼협의 중인 부모가 주민표상 별거한 경우에는 아동과 주민표상 동거(동일 가구)하는 자가 아동수당을 수급합니다.

- ◆ 지급 대상 아동이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자가, 양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아동수당을 수급합니다.
- ◆ DV(배우자 폭력 등)로 인해 다른 시구정촌에 주민표가 있는 상태로 센다이시에서 보호 생활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창구에서 상담해 주세요.
- ◆ 아동 수당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아동 부모 또는 양육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자)에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지급액】을 확인해 주세요.

지급일 · 지급액

【지급일】

센다이시에서는 원칙적으로 6월 · 10월 · 2월의 15일에 지급됩니다.

| 지 급 월 | 6월 | 10월 | 2월 |
|---------|--------|--------|---------|
| 지급대상 수당 | 2월~5월분 | 6월~9월분 | 10월~1월분 |

- ◆ 15일이 금융기관 휴업일이라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 센다이시 아동수당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수급자격 말소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이후에 지급됩니다.

【지급액】

아동 1명당 1개월분 지급액은 수급자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아동수당】 | |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및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 【특례 급부】 | |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 【지급 대상 외】 | | |
|--------------|------------------------|----------------------------|--|---------|---------------------------|----|----------|
| | 3세미만 (3세 탄생월까지) | 3세~초등학생 | 일률적으로 | 5,000 엔 | 일률적으로 | 없음 | |
| 일반수급자 | 3세미만 (3세 탄생월까지) | | 일률적으로 | 5,000 엔 | 일률적으로 | 없음 | |
| | 3세~초등학생 | 첫째아이 · 둘째아이 ※ ⁵ | | | | | 10,000 엔 |
| | | 셋째아이 이상 ※ ⁵ | | | | | 15,000 엔 |
| 중학생 | | 10,000 엔 | | | | | |
| 시설 양부모 등 수급자 | 3세미만 (3세 탄생월까지) | 15,000 엔 | 시설 양부모 등 수급자에게는 소득 제한 (상한)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 | 3세~중학생 | 10,000 엔 | | | | | |

※⁵ 수급자가 양육하는 생년월일 18세 도달 연도말까지의 아동들 중에서의 탄생 순서입니다.

- ◆ 아동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및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인 경우, 아동수당 법 특례급부에 해당해, 아동 1명 1개월의 지급액이 5,000 엔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상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 지급 대상 외가 돼서 수당을 못 받습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 · 소득 상한 한도액

| [이미지] | ①소득 제한 | ②소득 상한 한도액 | 제도 개정 |
|---------------------------------|------------------------|----------------|-----------|
| 2022년 5월분까지 (2020년 소득액으로 판정) | 아동 수당 | 특례급부 (5,000 엔) | (5,000 엔) |
| 2022년 6월분부터 (2021년 소득액으로 판정) | (10,000 엔 혹은 15,000 엔) | 특례급부 (5,000 엔) | 없음 |

| 부양 친족 등 인원수※ ⁶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 ① 소득 제한 한도액 (엔) | 6,220,000 | 6,600,000 | 6,980,000 | 7,360,000 | 1명 증가 시마다 380,000 엔씩 가산 |
| ② 소득 상한 한도액 (엔) | 8,580,000 | 8,960,000 | 9,340,000 | 9,720,000 | ※ ⁷ |

◆지급 대상 외가 된 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외'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에 소득 상한 한도액을 밑드는 경우
 - '지급 대상 외'가 된 연도 소득액이 소득 수정 등으로 소득 상한 한도액을 밑드는 경우
- 어느 경우에도 시민세나 세금의 통지서 등을 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문의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진 월분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 상한 한도액은 국가의 제도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분 수당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⁶「부양 친족 등」은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동일 생계 배우자와 부양 친족, 그리고 전년 12월 31일 시점에 청구자가 생계를 유지한 아동(부양 친족을 제외함)입니다.

※⁷부양 친족 등이 동일 생계 배우자(70세 이상 한정) 또는 노인부양 친족의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44만엔이 가산됩니다.

심사 대상 소득액

【심사 대상 소득액】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지급 구분은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소득액과 소득 제한 (상한) 한도액을 비교해서 판정합니다.

- ◆ 1월분~ 5월분까지 수당은 재작년 소득액으로 판정합니다.
- 6월분~ 12월분까지 수당은 작년 소득액으로 판정합니다.

【심사 대상 소득액 계산식】

$$\text{소득액} - \text{공제액} - 8\text{만엔 (일률적 공제)} = \text{심사 대상 소득액}$$

【소득액 · 공제액 목록】

| 소득액 | 공제액 |
|---|---|
| 다음 소득 합계 · 총소득 ※ ⁸ · 퇴직 소득 · 산림 소득 · 토지 등에 관한 사업 소득 등 · 장기 양도 소득 (토지 · 건물 등) · 단기 양도 소득 (토지 · 건물 등) · 선물 거래에 관한 잡소득 등 · 특례 적용 이자 등 · 특례 적용 배당 등 · 조약 적용 이자 등 · 조약 적용 배당 등 | 다음 공제액 합계 · 잡손 공제 · 의료비 공제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보험금 공제 · 장애인 공제 27만엔 (특별 40만엔) · 한부모 공제 35만엔 · 과부 공제 27만엔 · 근로 학생 공제 27만엔 |

※⁸급여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일시 소득, 잡소득, 양도 소득 (토지 · 건물 등 이외) 합계액. 급여 소득 또는 잡소득 등 (공적 연금 등에 관한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 그 합계 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 종합지소 창구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 서류는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수급자나 배우자, 자녀의 주소나 성명에 변경이 생겼을 때
- ◆양육 아동 인원수에 증감이 있을 때 (출생/입양/파양 등)
- ◆수급자가 센다이시 외 (외국도 포함) 에 전출했을 때, 수급자가 아동을 감호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수급자가 결혼, 이혼, 사망했을 때
- ◆혼인 등 사유로 아동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가 변경되었을 때, 입금 계좌 명의를 변경하려고 할 때
-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을 때
- ◆3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에 변경이 있을 때 (예 : 국민연금⇔후생연금)
- ◆아동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아동 양육자가 부모지정자에 지정되었을 때, 지정한 부모가 귀국했을 때
- ◆아동 양육자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 수급자가 미성년 후견인이 아니게 되었을 때
- ◆이혼 협의 중에 아동과 동거하면서 부모 인정을 받고 있다가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을 때
- ◆이혼 협의 중에 아동과 동거하면서 부모 인정을 받고 있다가 이혼 협의를 취소했을 때

※위 사항 외에, 신청자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불금 반환을 청구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센다이시에서 다른 시구정촌에 전출할 경우, **전출 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할 시구정촌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진 월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현황 신고

2022년 6월부터 현황 신고(매년 6월 1일에 있어서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 센다이시에서 6월 1일 상황을 확인 못한 경우,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 신고 제출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 경 센다이시가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현황 신고 제출이 필요한 경우의 예】

- ◆DV (배우자 폭력 등) 로 인해 주민표 주소가 센다이시가 아닌 자
-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아동 (무호적 아동) 을 양육하는 자
- ◆이혼 협의하면서 배우자와 별거하는 자
- ◆미성년을 후견하는 법인, 시설 등 수급자
- ◆기타, 센다이시에서 제출 요청을 받은 자

신청·신고·문의 창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창구 | | 주소 | 대표 전화 |
|----------|----------------|--------------------------------------|--------------|
| 아오바구청 | 보육급부과 육아급부계 | 〒980-8701 아오바구 가미스기 잇초메 5-1 | 022-225-7211 |
| 미야기노구청 | | 〒983-8601 미야기노구 고린 니초메 12-35 | 022-291-2111 |
| 와카바야시구청 | | 〒984-8601 와카바야기구 호슈인마에초 3-1 | 022-282-1111 |
| 다이하쿠구청 | | 〒982-8601 다이하쿠구 나가마치 미나미 산초메 1-15 | 022-247-1111 |
| 이즈미구청 | | 〒981-3189 이즈미구 이즈미 추오 니초메 1-1 | 022-372-3111 |
| 미야기 종합지소 | 보건복지과 보육급부계 | 〒989-3125 아오바구 시모야야시 칸논도 5 | 022-392-2111 |
| 아키우 종합지소 | 보건복지과 복지계 | 〒982-0243 다이하쿠구 아키우마치 나가후쿠로 오하라 45-1 | 022-399-2111 |